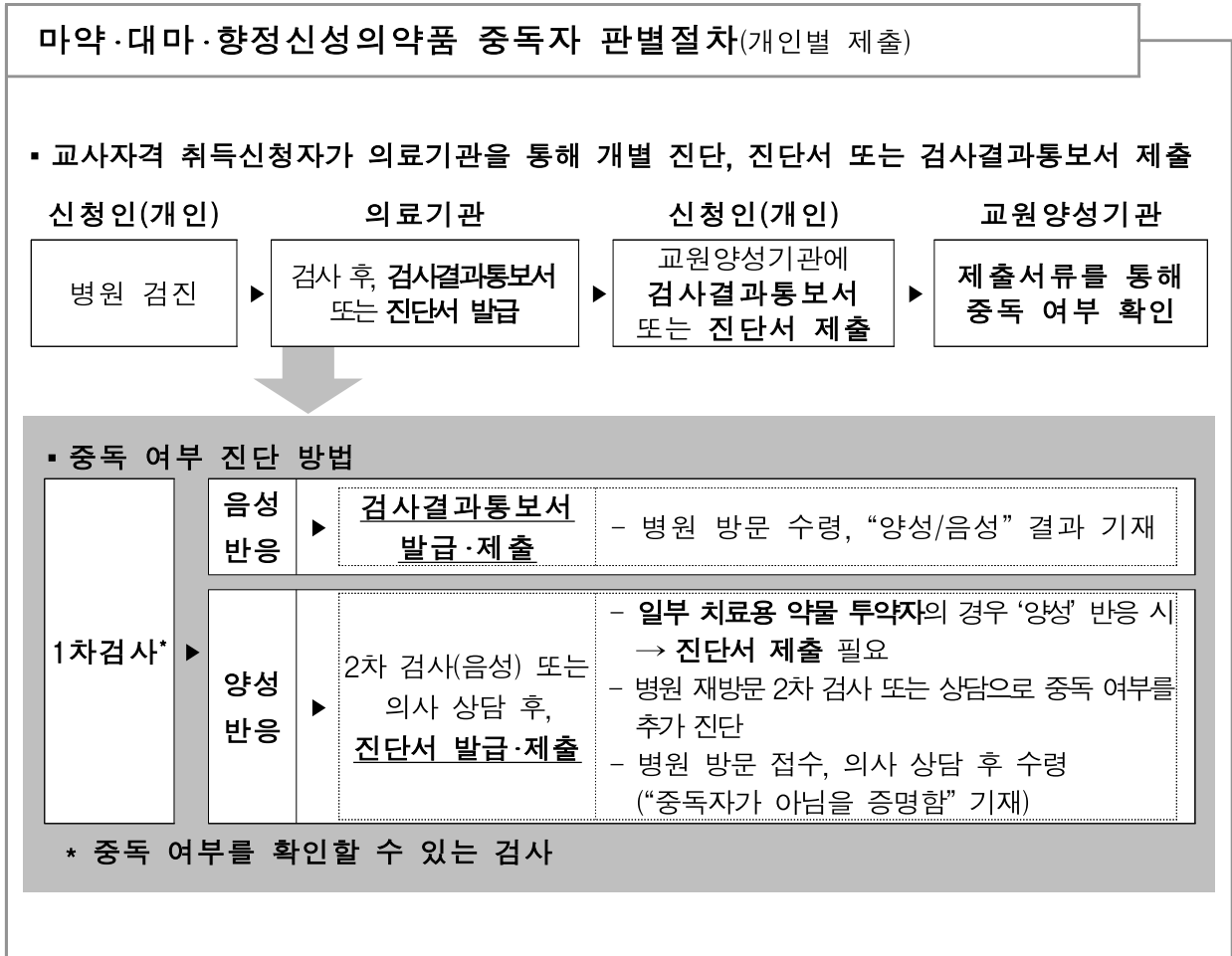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 서류유효기간 :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참고 3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안)

<h2 style="margin: 0;">건강 진단서</h2>				원부대조필 인	
병록번호 _____ 연번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 _____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전화		
병명					
소견	위 사람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				
비고					
용도	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		진단일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input type="checkbox"/> TBPE <input type="checkbox"/> 진단시약검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				
발 행 일 : 의 료 기 관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면 허 번 호 : 제 _____ 호 의사성명 _____ (인)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참고 4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안)**

접수번호	
------	--

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				
구분	시행시행기관	접수번호	성명	
검사시행			(한글)	
주임번호				
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검 사 내 역			
TBPE검사		기준범위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2021년 00월 00일

담당의사: (인)

의사소견	
중환판정	
판정보류 소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검사 기관 (인)	
사용제한	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도 외 專用(전용)금지

※ 결과통보서는 기관마다 발급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